

# 신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대구시 달성군과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달성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『신산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2월 20일

대구시 달성군수

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## 1 지원개요

- 지원목적 : 달성군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이전을 지원하고, 이전기술에 대한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
-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40,000천원
- 지원내용 : 기술이전료, 기술지원(시제품, 인증, 특허 등), 사업화지원(마케팅, 디자인 등) 등
-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4년 10월 31일까지

## 2 지원대상

- 신청자격
  -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인 중소기업
    -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
    - 향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이 예정인 기업

구분	① 기술이전 지원	② 맞춤형 사업화지원
목적	기술이전료 지원	이전기술의 사업화지원
지원 규모	8社 정도(기업당 1건)	5社 정도(기업당 1건)
지원 금액	최대 10,000천원 이내	최대 30,000천원 이내
지원 대상	○ 공고일 이후 국내·외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(기술료 납부완료)	○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내·외 기술이전을 완료한 기업 ○ 또는, 향후 2개월 이내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
공고 기간	상시 접수(예산 소진시까지) ※ 분기 또는 반기별 선정평가	'24. 2. 20(화) ~ 3. 26(화) ※ 선정기업 미달 시 추가공고
기업 부담금	-	지원금의 10% 이상 현금부담
지원 내용	단일	단일 또는 패키지 지원
	○ (단 일) 기술이전료 지원 ※ 기술이전 금액 20,000천원(공급가액) 이상	○ (단 일)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1개 선택 ○ (패키지) 세부지원 프로그램 중 3개 이내 선택 ※ 패키지 구성 시 프로그램 간 연계성 제시 필요 ※ 기술이전 프로그램은 신청불가
유의 사항	· 권리의 전부이전일 경우,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 제출 필요 * 권리의 전부이전 후, 2년 이내 제3자에게 권리아전 시 지원금 환수	·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시, 지원금 100% 선지급 * 기업명의 사업비 전용 통장 신규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입금
	· '기술이전 지원'과 '맞춤형 사업화지원'은 중복 신청가능 · 부가가치세(VAT) 및 지원금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 · 총 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(인건비, 간접비 불인정)	
우대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5점)달성군내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의 공급기술을 이전받았거나 예정인 기업</li> <li>· (5점)대구테크노파크의 중개를 통해 기술이전 완료 또는 예정인 기업</li> <li>· (3점)대구광역시 *5대 미래산업 관련 기술인 경우 *UAM(도심항공교통), 반도체, 로봇, 헬스케어, ABB(AI, Big data, Block chain)</li> <li>· (3점)*신산업 진출을 통한 사업재편 기업 *신산업 판단 :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4조의2</li> <li>· (3점)대형기술이전(기술료 5천만 원 이상) 기업</li> <li>· (3점)대구시 스타기업(Pre 스타기업 포함), 고용친화기업, 장애인 고용률 준수기업(3점)</li> <li>· (2점)출연연, 전문연, 대학 등 공공기술 이전기업</li> </ul> <p>※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(최대 10점 부여)</p>	

※ 지원규모 및 금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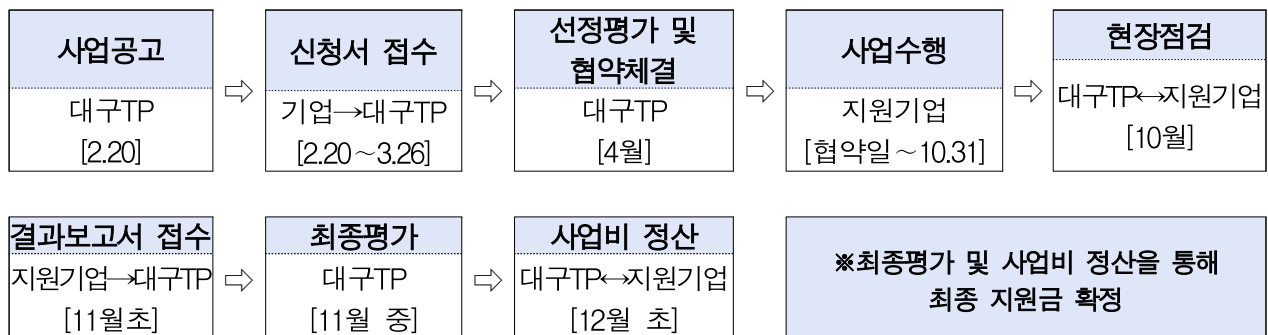
## □ 세부지원 프로그램

프로그램명		지원내용
기술이전	기술이전 지원	기술이전료 지원 등
기술지원	기술사업화기획	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기획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
	기술지도(자문)	애로기술 진단, 기술컨설팅, 이전기술의 추가 기술자문 등
	시제품제작	이전기술의 시제품제작 지원(설계, 개발, 제작 등)
	제품고급화	이전기술을 활용한 기존제품 기능추가, 성능개선 등
	인증지원	제품 신뢰성, 성능, 표준화, 시험분석 등
	특허지원	국내외 특허 출원, 특허 로드맵, 특허전략수립 등
사업화지원	마케팅머티리얼	브로슈어, 팸플릿, 홈페이지, 홍보영상, 웹 제작 등
	디자인	패키지디자인, 제품디자인 등
	브랜드개발개선	CI/BI 리뉴얼 및 신규개발 지원
	국내외 컨설팅지원	법률, 경영, 재무, 회계, (합자)법인 설립 컨설팅 등
	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	국내외 시장조사 및 해외 바이어 및 거래처 발굴 지원
	국내외 전시회참가	부스제작비, 참가비, 통역비 등 부대비용 등
	투자유치	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IR 자료 작성 등

※ 특허, 인증, 시험분석 등은 사업기간 내 결과물(출원서, 인증서 등) 제출 필요

※ 상기 목록에 없는 항목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

## 4 지원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※ 『기술이전지원』은 상시 접수 및 분기 또는 반기별 평가진행(현장점검 및 최종평가는 생략)

## 5

## 신청서 접수 및 문의

□ 공고 및 접수 : 2024. 2. 20(화) ~ 3. 26(화) ※『기술이전지원』은 상시접수

□ 신청서 교부 :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

○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(www.dgtp.or.kr) → 알림마당 → 사업공고

□ 신청방법 : 온라인 접수

○ 온라인 : 담당자에게 전자우편(transfer@dgtp.or.kr)으로 신청

※ 접수 후 유선 상으로 접수 확인 필수,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 부담

□ 제출서류

○ 기술이전 지원(상시접수)

No.	제출서류		제출 파일명
1	서식 1	○ 기술이전지원 사업계획서 1부 ※ 직인이 날인된 PDF 및 한글파일 모두 제출	1-1. 사업계획서(한글) 1-2. 사업계획서(PDF)
2		○ 기술이전 계약서	2. 기술이전계약서
3	서식3	○ 중복지원금지 협약서,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, 기업(개인)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	3.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등 각 1부
4		○ 사업자등록증 1부	4. 사업자등록증
5		○ 최근 2개년 재무제표(결산 기준) 각 1부 ※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	5-1. 재무제표(2021년) 5-2. 재무제표(2022년)
6	서식4	○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 각 1부	6. 우대사항 확인서
7	서식5	○ 기술이전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(특허등록원부 또는 기술이전 완료확인서 등)	7. 특허등록원부 또는 기술이전 완료확인서
8		○ 기술료 입금내역(입금증, 통장사본 등)	8. 기술료 입금증빙

## ○ 맞춤형 사업화지원

No.	제출서류		제출 파일명
1	서식 2	○ 맞춤형사업화지원 사업계획서 1부 ※ 직인이 날인된 PDF 및 한글파일 모두 제출	1-1. 사업계획서(한글) 1-2. 사업계획서(PDF)
2		○ 공급기업의 견적서 각 1부 ※ 공급가액(VAT제외)으로 견적서 제출	2-1. 마케팅 견적서(예시) 2-2. 시제품 견적서(예시)
3		○ 기술이전 계약서 ※ 기술이전 예정인 기업만 기술이전확약서 제출(서식 6)	3.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확약서
4	서식3	○ 중복지원금지 협약서,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, 기업(개인)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	4. 중복지원금지 협약서 등 각 1부
8		○ 사업자등록증 1부	5. 사업자등록증
9		○ 최근 2개년 재무제표(결산 기준) 각 1부 ※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	6-1. 재무제표(2021년) 6-2. 재무제표(2022년)
7	서식4	○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자료 각 1부	7. 우대사항 확인서
10	서식5	○ 기술이전 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(특허등록원부 또는 기술이전 완료확인서 등)	8. 특허등록원부 또는 기술이전 완료확인서

## □ 문의처

소속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기술사업화지원센터	김성혜 책임연구원	053-757-3783	transfer@dgtp.or.kr

## 6

### 평가방법

- 선정방법 :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
- 선정기준 : 기술성(20), 사업성(30), 추진역량(20), 파급효과(20), 우대배점(10점)  
※ 우대배점 : 해당표기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
- 평가방법 : (선정평가위원회) 사업계획서 발표평가  
(최종평가위원회) 결과보고서 발표평가  
※ 접수규모에 따라 서면평가가 추가될 수 있음, 『기술이전지원』은 서면평가로만 진행

## □ 지원제외 대상

-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,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, 이미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기업
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의해 기 지원 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
- 접수마감일 기준,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(보고서 제출,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고 있거나 대표가 신용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-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
- 고용·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
-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(용역업체 등), 금융 및 보험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- 현행 법령 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-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※ 선정 이후 과제진행 중 상기 지원제외 사항이 확인 될 경우, 사업 중단 및 사업비 환수 조치(기업, 대표, 총괄책임자 포함)